

복지 용구 급여 제공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여 방식 및 급여품목

1.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 의하여 제공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전용품목』 선택과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한다.
- ②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 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3.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전용품목

- 가. 이동변기
- 나. 목욕의자
- 다. 보행차(성인용보행기)
- 라. 보행보조차(성인용보행기)
- 마. 안전손잡이
- 바. 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사.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
- 아. 지팡이
- 자. 욕창예방 방석
- 차. 자세변환용구
- 카. 욕창예방매트리스

2) 대여제품

- 가. 수동휠체어

- 나. 전동침대
- 다. 수동침대
- 라. 욕창예방매트리스
- 마. 이동욕조
- 바. 목욕리프트
- 사. 배회 감지기
- 아. 경사로

제3조 연 한도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간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제4조 복지용구 급여기준

1. 복지용구 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지자체 승인 후 구입 또는 대여를 한다.
 - 2)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내에서 동일한 품목을 구매할 수 없다.
 -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용구 훼손여부 확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 에는 내구연한 이내 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 4)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며 대여기간 동안에는 동일한 품목을 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 5)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6조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제5조 복지용구 운용기준

복지용구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제공한다.

1. 복지용구 사업소는 제2조 제3항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복지용구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

공단은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복지용구 대여 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전체 대여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 가격의 1/3을 산정한다.
2.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 철거비, 수리 및 부품비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3. 수급자가 제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기간을 산정한다.

제7조 사후관리

1. 사업소는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제공한 복지용구 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급여내역의 일치여부 및 수급자에 의하여 당해 복지용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2. 기관은 수급자에게 제공된 복지용구가 우수제품 지정기준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센터에 즉시 신고한다.